

## 제 5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 1 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제 5.1 조 적용범위

1. 제3항과 제4항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자국 영역 내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절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은 이 절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적용범위에 따라 제12장(정부조달)에서 다루어진다.
4. 이 절은 이 장 제2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5.2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 제 5.3 조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근거로 사용한다.
2. 한쪽 당사국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 또는 그 관련 부분을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5조 및 제5.4조에 따라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표준기관이 이 절과 관련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개발하는 관련 국제 또는 지역 기관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G/TBT/9의 부속서 4)을 적용한다.

#### 제 5.4 조 기술규정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 제 5.5 조 표시 및 라벨링

1.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따라, 기술규정은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상, 그러한 기술규정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다.

3. 한쪽 당사국이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당사국은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재정상의 목적을 포함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 또는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 나. 당사국은,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 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행한다.
- 다.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국제상품분류체계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러한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 언어의 동시 사용은 다음이 만족되는 경우 금지되지 아니한다.
  - 1)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또는
  - 2)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라.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1) 비영구적 또는 탈착가능한 라벨, 또는
  - 2) 상품에 부착된 표시 또는 라벨링 대신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

#### 제 5.6 조 적합성 평가절차

-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가. 한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 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영역에서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메커니즘의 범주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인정을 위한 협정을 협상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기관이 실시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자국 영역 내에서의 인정 촉진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 제 5.7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양자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규제 사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표준 및 기술규정의 동등성
  - 나. 우수 규제 관행
  - 다. 투명성
  - 라. 국제표준과의 정합
  - 마. 공급자 적합성 선언에 대한 신뢰
  - 바.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 그리고
  - 사. 적합성 평가절차의 인정을 위한 메커니즘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절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 제 5.8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1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3.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알고 이해하며 그러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제3.2조, 제5.6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거나 통보하는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이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한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호주의 문의처, 또는 호주의 제안인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제안을 전달한 후, 대중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각 당사국은,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아니한 때에, 제3항에 따라 대중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중대한 의견에 대한 자국의 답변을,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5.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10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통보할 때, 이와 동시에 한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호주 문의처, 또는 호주의 제안인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 제 5.9 조 조정 메커니즘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명하고, 자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절의 이행과 이 절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절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 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의 검토 원활화
  -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 바. 당사국의 정보 요청에 응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의 교환
  - 사. 적절한 경우,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 아. 당사국의 질의를 적절한 규제당국에 회부함으로써 특정한 기술규정 영역에서의 협력 촉진
  - 자.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그리고
  - 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절을 검토하고, 그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절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한다.
4.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임시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임시 작업반의 범위와 위임사항은 양 당사국이 결정한다. 양 당사국의 결정을 조건으로, 각 임시 작업반은,
- 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정부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 나. 비정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 다. 관련 국제 활동을 고려하여, 그 작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임시 작업반 설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6. 이 절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다음 기관이 맡는다.

-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호주의 경우, 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 제 5.10 조 정보교환

이 절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 60일 이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 제 5.11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 제 5.12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비정부기관<sup>6</sup>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 제 2 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 5.13 조 적용범위

이 절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 제 5.14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확인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

<sup>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인용한 “비정부기관”의 정의에서 “지방정부기관”은 제1.4조에서 정의된 대로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

### 제 5.15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절의 운영과 관련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이 절의 목적상, 접촉선은 다음 기관이 맡는다.
  -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호주의 경우, 농림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접촉선은,
  - 가. 이 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한다.
  - 나. 제5.16조에 언급되는 기술 협의회를 조율한다. 그리고
  - 다.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 제 5.16 조 기술 협의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와 날짜에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기술 협의회를 개최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는 그 협의회에 참가한다.
2. 기술 협의회는 제5.15조에 언급된 접촉선에 의하여 조율된다.
3. 기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절의 이행의 검토 및 점검
  -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
  - 다. 제5.17조제2항에 따른 협력활동의 관여
  -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의 검토 추구, 그리고
  - 마.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기술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

### 제 5.17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한다.

- 가. 식품안전과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사안에 관여하는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견 교환을 포함한 협력
  - 나. 각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교환 촉진, 그리고
  - 다. 지식 및 경험의 공유
2. 양 당사국은 이 절의 규정과 합치되게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하여 협력 및 협조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양자, 지역 및 다자 수준에서 모색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나의 제5항나호 또는 제6항가호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통보가 세계 무역기구에 제공됨과 동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통보의 사본을 제공한다.

#### 제 5.18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